

제403회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27일(월)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
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0)
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1)
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1)
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4)
1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0)
1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0)
1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2)
1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84)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0)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1)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2)
17. 가상자산산업법(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
18.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
19.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
20.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
21.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
22.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
23.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
24.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25.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
26.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
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
2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
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

3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
3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
3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3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3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3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3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3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4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4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4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5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5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5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5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5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5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6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6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
6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
6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
6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
6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
6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9)
6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1)
6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1)
6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3)
7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4)
71.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2)
72.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
73.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
7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1)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15)
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8)
7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7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7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
8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8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8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8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
8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
8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
8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
8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682)
8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8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
9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
9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
9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7)

상정된 안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5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 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 5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 5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 5
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0) 5
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1) 5
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1) 5
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4) 5
1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0) 5
1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0) 5
1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2) 5
1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84) 5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0) 5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1) 5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2) 5
17.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 5
18.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 5
19.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 5
20.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 5
21.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 5
22.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 5
23.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 5
24.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5

25.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	5
26.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	5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	5
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	5
2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	5
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	6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	6
3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	6
3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	6
3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6
3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6
3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6
3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6
3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6
3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6
4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6
4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6
4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6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6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6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6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6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6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6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6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6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6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6
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6
5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6
5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6
5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6
5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6
5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6
5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6
6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6

(10시21분 개의)

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60건의 법률안, 국가보훈처 소관 32건의 법률안, 총 92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까지 소위원회 회의가 잡혀져 있는데 2시 반에 본회의가 소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아마 6시 넘어서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는 오전 회의에 논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간의 협의를 해서 다음번에 1소위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있고 하니까 일정 조절을 감안해서 하는 중인데 이어서 남은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할 때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 오전 안에 의결할 것은 의결해야 되니까 가능한 한 기존에 논의했던 것들은 압축해서 의결이 가능하도록 회의 진행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
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0)
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1)

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1)
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4)
1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0)
1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0)
1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2)
1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84)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0)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1)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2)
17. 가상자산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
18.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
19.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
20.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
21.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
22.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
23.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 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
24.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25.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
26.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
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
2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

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
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
3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
3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
3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3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3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3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3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3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4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4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4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5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817)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5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5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5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5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5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5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5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6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10시23분)

○소위원장 김종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0항까지 이상 6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쪽 앞부분의 소위원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날 소위 심사가 있었고요, 축조심의한 결과 제시되었던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다만 추가 논의사항으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최소투자비율,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비율, 적정 대여한도 비율, 인가요건 등과 관련해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논의를 이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한 페이지에 요약

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2022년 5월 27일 정부안으로 되어 있는 한 페이지 자료입니다.

먼저 벤처에 대한 최소투자비율 보시면 현행법상 공모펀드 입법 형식에 따라 법에서는 40%로 설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60%로 상향 규정할 예정입니다.

아래 참고 표를 보시면 자본시장법상은 이미 다양한 공모펀드에 대해서 4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도 40%로 설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서는 다른 공모펀드의 경우 50%로 돼 있는데 벤처기업에 적극적인 자금공급 정책 방향, 좀 더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공모펀드 대비 60%로 상향했습니다.

두 번째, 차입 필요성 관련해서는 해당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서 일정 부분의 차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벤처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입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자금이 더 필요한 경우에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차입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또한 차입을 하면서 차입의 목적, 한도, 절차 및 공시 등 차입과정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서, 차입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입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금전대여 필요성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자수익이니까 금방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지분투자의 경우는 회수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벤처기업 입장에서 지분투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대여금을 받아서 고수익에 대해 일부는 본인들이 보전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펀드는 금전대여를 통해서 탄력적인 운용 전략도 구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금전대여 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30~50% 정도 수준으로 설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가정책 관련해서는 금투업자에 대한 공모펀드 인가요건을 동일적용하되 VC의 전문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벤처투자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 VC가 일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금투업자와 공동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 부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전에 별도로 저희 의원실에 와서 보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법이 아주 급한 법은 아닌 걸로, 당장 이번에 꼭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서로 의견이나 이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토론을 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그게 해소되면 해소되는 방향으로 해서 풀어 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런데 사실은 아주 급하지 않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요, 현재 경기도 약간 안 좋아지면서 벤처업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창업을 이미 한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초기 창업에 아예 안 들어가면 초기 창업이 안 되지만 초기 창업을 이미 했는데 중간에 펀딩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져서 이런 법이 빨리 통과가 되면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 법을 우리가 논의할 때 사전에 소위에서 충분히 같이 의문 사항들이 해소된 다음에 또박또박 가면 될 건데, 한 번 딱 올려 놓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막 밀어붙이고 반대하면 마치 벤처투자를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토론에 임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는 그렇게 토론에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오기형 위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태도일뿐더러 충분한 논의와 소통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다양한 제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려 점, 벤처투자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에 대해서 그 목적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저는 동의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것의 수단의 적합성 문제를 갖고 논의하는 거니까 수단이 적합하냐에 대한 이러이러한 우려들은 해소가 안 된다 내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토론이 지난번에 하고 오늘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우려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모펀드 사태가 있었을 때, 사모 형식은

기본적으로 투자 전문가들끼리 자기들끼리 투자하는 거거든요, 폐쇄형으로. 투자하고 투자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이익이나 손해를 보든 간에 그 사모펀드 관여자들이 책임지면 될 문제인데 문제는 사모펀드를 사실상 공모 형식으로 2015년도에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모 형식으로 바꾸면서 일반투자자들을 참여시키고, 그래서 불완전판매가 일상화되고 그에 대한 후과를 일반 소비자들이 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에서 자세히 보니까 BDC 자체의 형태가 처음에 폐쇄형이지만 이건 상장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상장하게 되면 상장된 BDC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일반투자자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반투자자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리스크가 없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텐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가 일단은 벤처투자자와 관련해서, 지금 BDC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벤처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벤처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3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투자자한테 벤처에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소득공제까지 지금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반투자자도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공모펀드로 가면서 일단은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공모펀드 관련해서는 규율체계가 더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펀드의 규율체계가 훨씬 더 강하고 또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고요.

여기 더해서 자산운용사 시당투자 의무를 추가했고요, 5% 이상. 그다음에 직접 본인이 투자를 해서 손해 보면 같이 손해 보는 그런 장치가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5% 이상 그다음에 최소 10억 원 그다음에 5년 이상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자산 투자 의무도 있고요. 10% 이상은 국채나 예금으로 운용을 해라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피투자자 기업 관련 정보공시 의무 부여 등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투자가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걸 편

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산투자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 이상 지금 못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최소 개인 직접투자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단을 써서 모험자본 육성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기구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우 위원 지난번에 질문했던 거 몇 가지 확인해 봅시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나 공모형 펀드는 차입이 없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차입의 필요성……

○이용우 위원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 차입이 허용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이용우 위원 그랬을 때 가장 근거가 되는 거는 부동산 펀드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산의 담보가능성과 평가라고 저번에 제가 지적한 적이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이용우 위원 주식형 펀드나 코스닥 펀드를 한번 보시지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자산 변동성, 그 담보가치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런데 그것과 대비해서 봤을 때 프리IPO 회사는 그 변동성이 IPO 된 회사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이용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자산의 변동성 있을 때 자산의 얼마까지 할 수 있어야지만 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제가 시뮬레이션된 자료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이용우 위원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용우 위원 숫자가 100%인지 50%인지 30%인지 그게 명확하게 있어야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충격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현재 저희가 차입은 70% 정도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용우 위원 70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70%에 대한 근거

는, 사실 지금 ETF 같은 것을 봐도 2배 정도 됩니다.

○이용우 위원 ETF의 기초자산하고 그게 같습니까?

그리고 또 봅시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ETF는 2배가 아니라 사실 3배짜리도 있고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변동성이 큰데 똑같은……

○이용우 위원 변동성이 큰데 그러면 그 변동성에 따라서 기초자산이 가지고 있는 담보 여력 자체가 확보가 안 됐을 때 그 펀드의 부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국공채를 10% 했을 때 10% 그 충격 여력이 있는지 지금 그런 논의 자체가, 숫자가 설정될 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물론 변동성 측면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기존의 어떤 공모펀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용우 위원 많은 안전장치가 뭐가 많은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시딩투자 의무가 있고요. 5% 이상 시딩투자를 해야 되고, 안전자산 투자 의무도 있고요.

○이용우 위원 5% 자기자본 먼저 선 깨진다고 치고 10% 안전자산 국공채 하면 15%, 그러면 프리IPO 회사들의 손실률이 기존에 어땠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5%로 나머지 변동성을 커버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해 줘야 되지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라임했을 때 그 판매사가, 여러 금융기관이 팔았지요. 그런데 운용사가, 라임자산운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용사를 선정할 때 운용역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그 사람 레코드를 보지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레코드를 봤을 때, 제가 시장에 있을 때 라임 같은 데 투자하지 말라고 주변한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용역 자격증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 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판매 위주로 했던 사람이고 판매 보수에 포커스돼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법에는 시행령으로서 집합성장투자기구의, 할 수 있는 조건이 벤처캐피털이나 아니면 운용사 이렇게 분

리돼 있어야지만 서로 간에 체크 앤드 밸런스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고 증권회사도 한 부서로서, 차이니즈 월을 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시딩 투자를 했던 걸 펀드 형태로 포장해서 고객한테 팔았을 때 고객한테 리스크를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펀드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판매와 운용을 자꾸 분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 경우는 그 분리 의무를 시행령에 위임해서 두고 있고요.

이 자료에서 보시면 ‘VC가 일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그러니까 VC가 요건이 확실하게 되는 쪽이어야 되는데 미충족하더라도 금투회사가 판매업자가 더 투자를 해서, 그러면 그 미충족하는 VC하고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일치돼 버려서 빨리 파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버립니다. 이런 이해상충이 있는 걸 어떻게 해소할지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VC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요청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고려를 한 거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셔서 VC 미충족일 때 전혀 안 된다고 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윤창현 위원 시행령에다가 위임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법안심사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씩하나씩 다 짚는다 그러면 어떻게 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이윤수 자본시장국장입니다.

그것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용우 위원님 지적하신 차입 비율 관련해서도 법에서는 100% 한도 정도만 해 주시면 저희도 시행령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입의 목적이라든가, 그게 뭐 막 해 주는 건 아니고 주투자대상기업에 자금조달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고 이게 적시성 있는 투자가 될 거냐 이런 목적도 보고요. 절차도 굉장히, 차입 심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도도 법보다는 낮게 한 70% 정도 설정하면 또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는 그것보다 낮게 50% 이런 식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합투자규약 만들 때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 저희도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단계에서 그런 것을 촘촘히 만 들어서 차입 관련된 리스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들일 거고, 이것을 법에다 다 받기는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인가와 관련해서도 자산운용사가 기본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 우리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벤처기업 투자에 능력이 있는 자들한테는 문호를 좀 열자라는 차원에서 증권사 그리고 중기부의 관할을 받는 벤처캐피털도 인가 대상에 넣어서 그중에 레코드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해상충 방지나 등등의 문제는 저희가 시행령 이하 감독 단계에서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 금융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너무 지나친 포지티브가 우리는 정착돼 있고, 그래서 포지티브를 다양하게 하는 것밖에는 현재로서는 큰 해답이 없고, 이용우 위원께서도 민간에 개설 때 아마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양한 포지티브를 만들어 주고 그것을 민간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여러 개를 열어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해 주세요.

○**강민국 위원** 사실 시의의 적절성인데, 제가 최근에 실리콘밸리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인 스타트업인들하고 저녁 자리를 하게 됐는데 아주 좋은 많은 아이템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가장 문제가 결국은 펀딩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유대 자본들이 또 중국 자본들이 그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다 갈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몇 번의 논의를 거친 것 아닙니까? 논의를 거치면서 이게 우리 책상 위에 올라와서 스테이되는 동안 그 많은, 제가 주문했던 게 그거예요. 사실 내일 제가 토론회 하는 것도 여기에 관련해서 하는 건데, 내일 토론회에 일절 정치인들 안 불렀어요. 실무자만 불러서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정권 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할 때도 제가 똑같은 주문입니다. 제가 그때도 사모펀드 담당을 해서 사모펀드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했고

국감을 통해서도 했는데 뭐냐 하면 여야를 떠나서, 한 명의 천재가 나라를 살릴 정도가 아니고 한 명의 천재가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바로 벤처기업이고 또 사실 스타트업 기업들이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 보니까 AI 쪽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논의하는 동안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 자본들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동걸 회장께 그때 주문했던 것도 그겁니다. 실리콘밸리나 한인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산업은행이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해외에 투자해라, 해서 산업은행에서 진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1억 달러밖에 안 하더라고요. 약 1000억 가지고는 갖다 붙일 데도 없어요.

지금 정부안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안이 충분히 보충됐고 또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빨리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서 벤처캐피털이나 벤처기업들이나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말 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민 소위원장님도 그때 모시고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된 것 같고 한테 계속 우리가 다룰 수는 없는 것 같고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빨리 투자돼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박재호 위원님 하시고 김한규 위원님.

○**박재호 위원** BDC를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기업들 지금 현재 이런 경기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답변하십시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이윤수** 저희가 공개적으로는 아니고요 비공개적으로 해 보면 증권사 23개, 자산운용사 9개, 신기술금융사 7개, 한 39개사 정도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 물론 VC 쪽은 더 많은데요 그쪽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카운트는 안 했고요. 그리고 예상 조성 금액은 저희가 받아 봤을 때는 최소가 펀드당 300인데요 한

2조 이상 모아서 한번 투자를 해 보겠다라는 수요조사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수요조사는 해 본 일이 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이윤수 예.

○박재호 위원 어쨌든 비상장기업의 자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BDC, 영국은 VCT 등의 제도를 우리가 벤치마킹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했던 겁니까?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이윤수 미국이 제일 활발하게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영국은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이윤수 영국도 상당히 잘되고 있고요 규제가 우리보다는 없는 상태라서 저희도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펀딩이나 운용에서 규제는 가급적 덜 하고 하위법령이나 감독 사이드에서 이것을 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영국하고 미국 사례는 상당히 스터디가 돼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사모펀드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동일 운용사가 사모·벤처 펀드라든지 또는 BDC를 동시에 운용했을 때 발생할 문제는 없어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이윤수 자기자본 투자나 아니면 펀드 간의 거래, 이해상충 방지 이거는 저희 기본 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더 유념을 해 가지고 이해상충 문제나 어떤 계열사를 밀어준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법안 통과되면 조금 더 촘촘히 만들어서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에 자율을 많이 줍니다. 대신에 잘못했을 때는 엄청난 벌을 주지요. 그렇지요, 아예 못 들이도록?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이윤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게 허술하니까 사모펀드 잘못해도 책임을 아무도 안 지잖아요. 변호사 잘 사면 얼마 안 살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별로 없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런 규제를 다 풀어 가지고 해 주고 대신에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했으면 자본시장에 발을 들

일 수 없을 정도로 엄하게 매기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되니까 여야가 함께 자꾸만 규제에 대해서 ‘더 철저히 너희가 감시·감독 안 하면 국민들한테 피해만 있다’ 이런 식으로 전이가 돼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규제는 가장 최소화하고 대신에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근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접근법을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물론 오래된 법안이라서 조금 전에 이용우 위원님이나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떠나서 진짜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면 여러분들도 금융위원회에서 감시·감독하기가 어렵다 이러지 말고 오히려 처벌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든지 법체계를 만드는 과정을 하면 오히려 더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우선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자금 수요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혁신성장펀드 예산 관련해서 논의할 때, 뉴딜펀드 예산을 이룰 바꾸면서 대폭 줄이면서 ‘이미 다 투자되고 잉여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도 충분히 많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랑 전혀, 필요성에 따라서 다른 상황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하고요.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만약에 생기면 투자자들이 되게 선호하는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모펀드나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에 같은 목적으로 투자했던 분들 수요가 이쪽으로 옮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드는데.

하나씩 보면 금전대여 관련해서 결국 주투자대상기업 여기다가는 금전대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회사가 발생하는 사채나 CP 이런 것을 투자할 수도 있는데 굳이 금전대여를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실제로 사채업이 되는 거잖아요. 은행이 해야 될 금전대여를 다른 비은행 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허용해 주는 거라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부터 여쭙볼게요. 이것도 소득공제가 되는 겁니까, 개인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이윤수** 여기는 세제 혜택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세제 혜택은 없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같은 경우에는 엑시트(exit)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쪽 투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개인들은 이쪽으로 많이 옮겨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투자의 폭을 넓혀 주는 게 아니라 투자하려는 사람은 제한적인데 다른 투자 수단 자체가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이쪽으로 그냥 방식만 옮겨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우 위원님이 얘기하는 차입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제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할 필요는 없지요.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요건들은 시행령으로 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저는 정팔편법으로 운용될 우려가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40%로 하게 되면 시행령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나머지 60%는 대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40을 법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시행령에 60 이상으로 할 의지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법에도 그냥 60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질문드린 것도 한꺼번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부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지금 대체 가능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VC 투자자들이 전부 이쪽으로 몰리면 결국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VC 개인투자자들이 아주 많은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득공제도 해 주긴 하지만 한 군데에 다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번 들어가면 한참 있다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개인투자자들이 VC에 잘 들어갔다면 우리가 더 이상 비이클(vehicle)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기간 문제도 있고 또한 군데 들어가야 되고 또 전문지식도 없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기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이윤수**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지금 시장에는 비상장기업 투자 수요가 상당히 니즈가 있어서 사실상 하는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 보호도 안 되고 불안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수요를 흡수하는 측면은 저희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대역 관련해서 지금도 벤처 댕(venture debt)이라고 해서 이것은 글로벌하게 많이들 펀드에서 쓰고요. 지금 중기부도 벤처조합에서도 대출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다양한 기업 니즈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 수단 정도로만 보지 이걸 과도하게 쓰거나 이럴 가능성은 되게 낮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소투자비율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법체계상 40 있던 부분 그다음에 시행령에서는 조금 더 앰비셔스(ambitious)하게 해서 60 한다고 해도, 우리가 최소투자비율을 60 정도로 하면 금융회사들은 그 규제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버퍼를 가져가야 됩니다. 60이라고 그러면 버퍼를 한 10 정도 갖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투자 의무가 한 10 정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령에서 60으로 한다고 해도 한 80%는 기본적으로 다 묶이게 되고 20% 정도밖에 재량이 없고요. 이걸 우려하시는 무슨 대기업 투자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도록 저희가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실제로 투자기구를 운용하는 데서 결정할 거지 금융위에서 대기업 투자를 적게 하라고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생각이구요.

아까 ‘앰비셔스하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걸 입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40%를 법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60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60% 이상으로 정하겠

다 그게 우리의 권한에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전대여 필요성은 다른 데서도 법안이 나와 있다는 건 전혀 해답이 아니에요. 그로 인한 은행업 라이선스를 실제로 우회하는 거라든지 은행처럼 대출하는 데 있어서 회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덜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텐데 은행업 라이선스를 감독하는 금융위에서 이런 우회적인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법안들도 있다는 식으로 해답을 하면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현재 있는 제도를 잠시 보면 사실 벤처투자조합을 상장할 수 있게 해 주면 이것과 유사해지기 시작합니다, 벤처캐피탈이 폐쇄형 상장 안 돼 있는 걸 개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사실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출발했다고 느껴져요. 그랬을 때 현재 벤처캐피탈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개인들이 투자했을 때, 그러면 그 개인이 여러 명이 됐을 때 개인에 대해서 벤처캐피탈이 자금을 모집한 거니까 그 모집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공시를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가 명료하게 있어야지만 상장의 문제가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BDC를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들 논의가 별로 안 보여요.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숫자를 법안에 넣을 필요는 별로 없다고 보여요, 원래부터. 왜냐하면 대여해 줄 때는 펀드 자산의 시가가 얼마의 버퍼를 가져야 된다, 각각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평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법에 주어져 있고 그것은 개별 시행령에서 평가했는데 그 평가를 못 지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숫자 자체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법에서 어떤 숫자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 펀드의 기준 자산이 얼마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설정했는데 기준 자산이 80인데 기준 자산의 30~50까지 대여를 할 수 있다 이러면 기준 자산의 평가에 따라서 이것도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체계 자체가 보면 기존의 틀에 너무 묶여 있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운용하는 쪽과 판매하는 쪽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방지하고 또 상장이 일어나면 일반 고

객들한테 어떻게 공시해서 그걸 방지할 장치를 둘 건가, 이런 논의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런 논의가 생략된 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의 논의를 충분히 한다면, 그러면 그 외의 것은 업체가 알아서 할 일 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권사가 이런 걸 가진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법안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지금 VC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금투업자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것을 만들어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쪽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사가 펀드 운용하고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존에도 증권사가 이미 혁신기업에 종합적으로 IB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들이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증권사도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유의동 위원님.

○유의동 위원 세 분 중에 어느 분이냐 대답을 해 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특히 금융위가 시장에 새로운 투자를 일으켜야 되겠다, 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있을 때마다 무슨 펀드를 만들어요. 뉴딜펀드니 뭐니 뭐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국정감사 때인가요 상임위에서 여러분들께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집행률은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우리가 대외적으로 몇십조를 조성했다 이런 선언적인 선전 효과만을 노려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이 돈이 어디에 필요한지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조사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매번 이름만 바뀌면서 그 형태는 계속 유지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도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조속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사모펀드 문제가 있었을 때, 각종 이해충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조국 교수님 이런 사람들의 문제하고 자본시장의 발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 줘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이 발전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워 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 루프홀(loophole)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루프홀들을 어떻게 잘 메꿔 나가고 또 다음 단계로 발전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효과가 충분히 지금 금융위에 있느냐, 금융위가 그것이 있었다면 나름대로 백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고민했다면 그것을 의회와 충분히 교감을 했느냐, 저는 그건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간에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조국 사태, 그 사모펀드 사태가 난 이후에 여기서 생겼던 루프홀들을 이런저런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고쳤고 저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이 선행되고 난 뒤에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지금 이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의 법안이 진행돼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급한 법이냐 안 급한 법이냐, 저는 안 급한 법은 없다고 봐요. 더 급한 법이냐 덜 급한 법이냐, 법이라는 게 다 기본적으로 급하지요. 그런데 얼마나 더 급한 법이냐의 문제인데, 정부가 이 안을 낼 때는 정말 급했으니까 이것을 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급한 것에 비해서 의회를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 의회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아쉽다고 보는 거지요.

그냥 정부가 ‘우리가 나쁜 사람들 도와주려고 이런 법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동의해 주셔야지요’라는 자세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상임위에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동의하지 못하지만 이 자체로도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 지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기회를 그런 좋은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쭙니다.

지금 소위에서는 많은 부분 의견이 좁혀진 부분이 있는데 지난 소위에서 지적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지만 아직도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금전대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필수적인 겁니까? 이것이 콤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법이 완성이 안 되는 건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상대적으로 좀 자금이 적어질……

○유의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을 일단 통과시키면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를 일정 부분 충족을 시키는데 100% 완벽하게 충족을 못 시킨다, 이 금전대여가 없으면. 그렇지만 금전대여 문제 때문에 이 법이 통과 안 되는 것보다는 낫다’ ‘아니다. 금전대여가 없으면 이 법은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금전대여 필요성하고 차입 조건이 꼭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차입 조건에 대한 것들이 완성이 안 되면 이 법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못 가는 거냐 이런 질문이 저한테는 생깁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첨언을 더 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인데 시장에서 저희가 내놓은 법이 완성돼서 작동되고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것을 따르려면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합쳐져서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법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시행령은 저희가 살펴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시행령을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러니까 정부안도 여러분이 내셨고 시행령도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라는 것을 같이 주셔야 저희가 이 법이 이 정도로 탄탄하구나라는 설득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시행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략 준비가 되셨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내놔 주셨으면 좋겠고 그건 당부고, 이 앞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가 차입이랑

금전대여를 안 한다고 전혀 못 하는 건 아닌데 그 효과는 사실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차입 아까 말씀드린 건 이게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기업이 커지면 더 돈을 넣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대안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60% 이상 돼 있고 안전자산이 10%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용상 보시면 적어도 75% 이상은 이미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고……

○**유의동 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최소투자비율이 60%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전자산 운용을 한 10%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약간 버퍼 같은 것도 생각하시면 60%로 딱 정해 놓으면 보통 60%보다 더 해야지 아니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최소 70%에다가 5%, 10% 정도를 더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80% 정도 자금이 묶이는 건데 그다음에 벤치가 점점 커지면서 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추가 투자를 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밖에 안 남은 거지요.

○**유의동 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이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필수 조건인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숫자를 약간 줄이는 방향 정도로 하시는 건 어떠실지?

○**이용우 위원** 잠깐, 그 부분 한 가지만.

자금 대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크본드 시장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펀드가, 사실 자금 대여를 증권으로 표현하면 채권이지요. 그 채권을 인수할 투자자 정크본드 시장이 있다면 그걸로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이일드 정크본드로서 채권이 발행이 되고 소화가 되는데 이 때문에 사실 채권 발행의 형태로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면 약간의 금전대여로 커버해 주는 이런 구조예요.

지금 자금 대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자금 대여가 아니고 실제로 보면, 그러면 과연 정크본드 하이일드 채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신용평가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 아니면 그 계

약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장이 있느냐? 만약에 시장이 있다면 공모해서 할 때도 충분히 개인투자자한테도 이걸 등급이 얼마고 얼마의 금리다, 사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였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금전대여할 때 금리 얼마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리 한 15%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급이 그런 상태인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못 받는 회사인데. 그렇다면 그 15%가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나? 그렇게 되면 조금 있으면 아마 채권으로 다 안 하고 전환사채, BW하고 섞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 자체가 제대로 워킹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 줘야지만 이 펀드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잘 안 됐다는 뜻이에요.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오늘 이 논의를 계속해서 의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 심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소위원장 김종민** 간단하게.

○**강민국 위원** 사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지적이 다 맞습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이 다 맞고요.

그런데 작년이었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펀드를 내놨을 때 제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사실 그것 말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떠안고, 투입한 35% 정부자금에서 10% 손실 떠안겠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구조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걸 해 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표현을 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구조로 어쨌든 우리 법안소위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벤처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 한시도 그게, 투자라는 것은 사실 시의의 적절성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고금리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벤처기업 또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안소위가 지금 이거 하나에 묶여서 계속 딜레이될 수는 없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양당 간사님이 위원님들 의견 총 취합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담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한홍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위원장 김종민** 윤한홍 간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요.

○**윤한홍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가 목적인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윤한홍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년도 벤처기업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정부 정책 지원금을 통한 조달이 64%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윤한홍 위원** 저는 이거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벤처기업에 정부가, 정부가 돈을 대어 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간 거예요. 64%를 정부 정책 지원금에 벤처기업이 의존한다면 기존 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증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한데 사실은 기존의 공모펀드 사모펀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하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제시한 이 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정리가 잘되어 있는 거예요. 제한이라든지 규제라든지 투자자 보호장치라든지 이런 것 상당히 신경을 쓴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우 위원이나 오기형 위원님 같은 분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뭘 주장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르게 나왔는지를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소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강민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벤처기업들은 정부에 손 내밀고 다녀야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에 가서 돈 달라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돈 달라고 정부를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는 조금 민간으로 돌리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정치하게 위원님들 반대하는 논리, 지적 부분 세밀하게 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여기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정책지원금 64%? 이것 줄여야 됩니다. 50% 밑으로 줄여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정도는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꼭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하고 분석해서 각 위원님들 좀 더 설득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으니까요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오늘 나온 말씀들이 상당히 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필요성 문제에서 금융위가 잘 설득을 못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즉 투자 혹은기라는 것은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중기부 예산도 그렇고 벤처·성장금융 예산도 그렇고 예산에서는 다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에서 민간금융 쪽으로 벤처투자 재원 조달을 이동하는 건 맞다, 방향은 좋은데 지금 시점이 그 시점이겠느냐, 조금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호황기에 그런 정책 변화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 혹은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새로운 제도라도 빨리 만들어서 기존의 공공 중심의 정책금융에서 민간금융으로 벤처투자 펀드의 이동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점이 지금 대한민국 벤처산업의 시기, 수준상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보태면, 여기 전문성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크게 보면 전문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자금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전문성이 있어요. 증권사가 이런 건 잘하지요. 은행이나 증권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높은 그런 투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BDC의 전문성에는 이게 공공 성격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투자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벤처투자 전문 금융회사에게 그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퍼블릭 자금관리 잘하는 전문성한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법의 상당히 중요하고 고민거리입니다, 자금관리를 안정적으로 해야 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벤처투자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증권사로 본다면 후자의 전문성은 떨어져요. VC로 본다면 전자의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가 위원들한테 제시가 되어야 위원들이 이 논쟁을 안 하는 건데 지금 금융위가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이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 일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어찌고, 이거 미충족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답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전문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과 시스템을 대안을 제시를 해놔야, 증권사들한테 다 맡겨 버리면 뭐 하러 이거 만듭니까, 증권사가 벤처투자 전문가들도 아닌데?

그건 아까 이용우 위원님이 제시한 운용과 판매의 관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설명을 제대로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시가 됐든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됐든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꼭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여 문제가 나왔잖아요. 대여 문제도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서 답답한 게 이 대여는, 실제로 이게 투자펀드인데 투자펀드에서 대여해 가지고, 그러니까 펀드 입장에서 대여하고 싶겠습니까? 투자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여라고 하는 것은 투자하고 연계된 대여지요. 투자를 했는데 벤처 사업가가 자꾸 투자받으면 지분이 침식되니까 대여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걸 투자하고 연계된 대여입니다. 따라서 이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얘기하는 대여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설득하면, 사실 이 대여 가지고 논쟁할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외국 것 갖고 오면 그냥 통과시켜 주겠거니 하고, 이 정도 문제의식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금융위가, 지금 이용우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몇 분 있잖아요, 문제 제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위원님들. 그분들하고 개별적인 논의를 하셔서 그분들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소화할 건지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소위로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실래요?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반복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런데 위원님들

께서 개별로 저희가 얘기할 때 좀 시간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시간을 안 잡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피드백해서 조율되고 논의가 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음번 우리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예.

○이용우 위원 올라와 있는 법안 중에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과 제가 발의한 생명보험법, 자산운용 관련한 법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각각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논의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한번 갖는 게, 그 법안을 하루아침에 똑딱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를 명확하게 우리가 법안제1소위에서 테이블에 다 올려 놓고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해서 조금씩이라도 진도를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여야 간사께서 합의하셔서 소위 일정을 한번 잡아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소위에서 상정해서 논의하고자요?

○이용우 위원 아니, 공청회를 한번 가져 보자.

○소위원장 김종민 아, 별도 공청회로?

○이용우 위원 예.

○소위원장 김종민 그건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소위 공청회가 합의된 건 아니에요. 지금 양당 간사 간에는 가상자산입법 공청회하고 온라인 플랫폼법 공청회 두 가지는 합의가 됐고, 온플법은 일정이 잡혀 있고요 가상자산법은 아직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업법은 공청회가 합의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소위 논의로 법안 상정하는 게 원래 순서인데 공청회 논의를 통해서 걸러 보자

이런 의견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윤한홍 위원** 제가 말씀 좀 올릴까요?

○**소위원장 김종민** 이것은 토론할 건 아니고 일단, 어차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만 하고 간사 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간사 간의 협의 통해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와 관련해서 일부 이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수정안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 보고받으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도입 법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몇 차례 소위에서 논의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들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나 윤관석 의원안에서와 같이 과징금 부과 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독립성이라는 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 절차 조항을 법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과징금 도입은 금융 당국의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수정안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이상 4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7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소위 심사자료 1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지난 11월 22일 날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 결과 합의한 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문별 합의 내용은 5쪽 이하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자구 등 보완 사항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저희가 조문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문 표현 명확화를 위해서 문구 등을 수정·보완한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맨 밑의 51조(과태료) 부분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3쪽의 추가 논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선불충전금을 신탁이나 예치,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별도 관리하지 않는 예외분하고 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선불업자가 보유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 보유분에 대해서 선불업자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할지 아니면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제한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법에는 없고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는데요. 원칙은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게 돼 있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일부를 직접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고 대신에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 세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A 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용을 하되 운용 방법의 제한을 전혀 하지 않는 안이고요. B 안은 별도 관리 예외분에 대해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제한을 하고 보험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 방법 제한을 하지 않는 안입니다. C 안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제한하는 안입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상의 안전자산의 종류는 4쪽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말씀 주신 추가 논의사항 관련해서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되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C 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가이드라인과 동일한데 지급보증보험 가입 시 운용 방법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전자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보험에 실제로 가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보험사에서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 같은 것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어서 저희 C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C 안에서 안전한 방법 대략은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대통령령으로 어떠한 안전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금융혁신 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4페이지에 있는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고요. 현재 가이드라인은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자산으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범위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최소한 AAA등급 이상의 회사채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전번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업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좀 의논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는냐 하면 정의 조항 중에서 범용성 요건 삭제에 대해서 개정안은 범용성 요건을 삭제하여, 수범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나 범용성 요건이 삭제될 경우 단일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프트콘 등이 포함되어 사업 영위가 어려워진다는 민원이 있고요.

이런 경우 쿠폰 사업자들도 선불충전금의 신탁 의무 그다음에 자기자본비율 유지 등의 과도한 의무가 주어져서 모바일 교환권 생태계가 축소하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위원님, 이것은 지난 11월 달에 사실은 쟁점 포인트 중의 하나였는데요. 거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현재 선불충전금 규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2021년도의 머지포인트 사태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머지포인트에서, 지금도 소송 중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쪽에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끝까지 주장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업종제한이었습니다. 이 업종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소매업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국에 있는 편의점 대상으로 모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 규제를 통해서 발행을 못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자본 규모 20억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채비율 200% 이 규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년 6개월, 공포 후 1년 이후에 이게 발효가 되고 또 발효된 이후에 6개월 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래서 범용성 요건을 삭제할 경우 범용성이 지나치게 낮아 감독 필요성이 떨어지는 지급수단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특정 제삼자로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거나 물품교환형 쿠폰의 경우에는 선불지급수단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범용성 요건을 그대로 둘 경우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현행 광범위한 통계청의 업종 분류가 아닌 금융위가 대통령령으로 업종의 범위를 재지정하여 범용성 요건을 남겨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발행 규모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발행 한도와 발행 잔액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에는. 그래서 굉장히 미미한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 자체가 제외됩니다.

○박재호 위원 제외되고, 그걸 시행령에서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겠지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예.

○박재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26조의 전금업자 등록면제 범위 축소에 대한 의견의 민원도 좀 있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동일한 직영사업자인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예를 들면 스타벅스는 제외되는 반면에 가맹점 사업주가 여러 명인 일반적인 가맹업자, 예를 들면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는 포함되어 규제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그거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결국은 사업자 기준으로 하면서……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그게 한 사업자면 전부 다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스타벅스나 거대 기업은 가능하지만 조그마한 사업자들은 개개인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프랜차이즈 경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 대상에 빠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은……

○박재호 위원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하면, 사업주가 사업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빠진다고 이 말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스타벅스가 빠지는 이유는 대표적인 것이 자체적으로……

○박재호 위원 자기 직영점이지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그렇기도 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지금 제삼자 발행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것을 발

행하는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의상.

○박재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조그만한 커피 프랜차이즈 이런 게 성장하려고 할 때 이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이것도 작년 11월 달에 논의했을 때 제삼자 요건을 계속 견지할 거냐 아니면 폐지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게 있었는데요. 이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삼자 요건을 폐지하는 것은 과거에 상품권법을 폐지했었던 그런 취지에 반하고 실제로 본인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약관 규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비자 보호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삼자 발행 요건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재호 위원 또 최근에 민원 온 것 중에서는, 게임 캐시라는 거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게임을 하는 캐시.

자체 발급한 게임 캐시를 활용하는 게임 기업이 전금법상의 선불업자 규정을 받게 될 가능성 때문에 게임 업계에서 상당한 부담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 의견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금번 법안이 범용성 요건 완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저희도 듣고 있고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영세한 규모에서 소비자 피해 미미한 그런 분야는 발행 잔액이라든가 총 발행액의 규모를 등록요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거기서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2, 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만약에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 개정안의 취지가 사실은 퇴색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위원 우리나라는 무슨 사건이 한 번 일어나면 법을 다 만들어요, 규제 또 규제. 그래서 다음에는 규제가 너무 많다, 이거 풀자,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이라도 어찌 보면 소액 또 클 수 있는 업종 이런 것은 조금 허락해 주는 게 더 맞아요.

그런데 너무 이러니까 다들 불안해해요. ‘우리가 무슨 여기에 들어가노’. 그런데 이게 법으로 하면 또 금융위에서 규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지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35조의 소액후불결제에 대해서 광범위한 여전법 준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소액후불결제의 도입만으로 핀테크 기업에 신용카드업과 동일한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도대체 어떤 조항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법문에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고 포괄적으로 다 준용시키는 것은 법제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또 사업자들의 사업 영위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없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고 또 의견을 들어 봐서 조문 정비부터 필요하다, 이런 포괄적인 법안 문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업종별로 있을 이런 것을 해소시킬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이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BNPL(소액후불결제)에 대해서도 이미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샌드박스를 할 때도 부가 조건을 붙여서 여전법 조항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샌드박스를 하고 있는 것을 어차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도화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조항이 결국은 그 제도화를 하기 위한 근거조항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게 되면 선불업자들이 소액후불결제사업을 못 하게 되는, 샌드박스 제도가 오히려 중단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샌드박스에서 부가 조건으로 적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전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구체적인 범위도 결국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조항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현재 부가하고 있는 조건은 예를 들어서 자산건전성 분류·운용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이런 것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저는 이 전금법 내용을 가지고 많은 민원을 듣고 많은 의견을 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소위 말해서 조그마한 소형으로 영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상대도 안 해 주고 자기들 이야기도 안 들어 준다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고 그분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요건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윤창현 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좀……

○**소위원장 김종민** 윤창현 위원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가능한 한 간략하게……

○**윤창현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힘내라 핀테크’라고 해서 핀테크 업체들 같이 세미나도 했었는데 역시 35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것이 부담이 된다는 면에서 한번 대화 좀 하시고 얘기를 들어 본 다음에, 그 혁신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시행령에다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 올리자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전자상표권 업체에 이 개정안을 통해서 새롭게 적용되는 범위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의견을 제기하시는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현재 하고 있는 발행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독원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등록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물론 미등록업체들이 얼마만큼 많은지 사실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지만 현재 어느 정도의 포섭 범위 자체가 없다 보니까 협조받기가 어려운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김성주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몇 차례 논의하면서 쟁점들이 확인됐고 개선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전히 일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범용성 기준을 삭제했을 경우에 개별 업종에서 그동안에 사용 가능했던 기프트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대상이 됨으로써 과도한 제약이 되는 것 아니냐, 또 새로운 소규모 업체들이 그런 것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장벽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금융위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모바일 교환권만 발행하는 그런 쿠폰 발행 업체의 경우에는 이 대상에서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신탁 의무에서 예외로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도 있어요. 다른 위원님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금융위 입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범용성 요건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발행 잔액과 총 발행액 기준으로서, 그 허들을 넘는 업체들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기프트콘 발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요건을 준수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일정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자본 20억과 부채비율 200% 정도고요 보통 모든 금융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도의 건전성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김성주 위원 모바일 교환권을 발행하는 쿠폰사에 대해서는 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 신탁 의무를 예외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끝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이용우 위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쿠폰을 제외해 달라는 것은, 제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범용성이라든지 업종의 다양성 이런 것을 보는 것이지 쿠폰을 모바일로 하는 건지 다른 증서로 하는 건지의 여부는 본질적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쿠폰을 예외로 해 달라는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 사안도, 이 법안도 지금 금융위가 C 안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핀테크 업계에서는 이러면 핀테크산업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오늘 제기하신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 가지고, 쟁점 정리를 한번 개별적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꼭 결론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7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소위 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지점·출장소의 설치·이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개정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인가’를 ‘신고’로 하고 ‘신고’를 ‘보고’로 하는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형사처벌 규정을 과태료로 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 5쪽의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규제를 인가에서 신고로 완화함으로써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도 현행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해서 고려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점 규제 완화로 수도권 쏠림과 대형·중소형 상호저축은행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쪽입니다.

개정안 제37조의3제1항에서는 상호저축은행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각종 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달성하고 임원의 과도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쪽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고려사항으로서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재에도 상호저축은행의 사금고화나 부실 경영이 그간 발생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완화

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첫 번째 부분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임원의 과도한 책임 경감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후에도 저축은행 임원들이 예금자들에게 상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저축은행상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상법상 손해배상책임만 부과된 은행 등 타 업권 이사들의 책임 정도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경영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과실만 빼는 것이기 때문에 타 업권에 비해서는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의동 위원 경과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대답하세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입니다.

이 관련 조항은 다른 은행의 경우에는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경미한 과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의와 중과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면 고의의 경우에는 알았느냐 알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다음에 과실에 관해서는 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간주되느냐가 과실, 그런데 요새는 실무적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원에 있어서는 고의와 과실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분도 모호해지는 면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는 아주 정말 간소한 과실이다, 경과실의 구체적인 예를 제가 여기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사회 통념상 이걸 정말 별로 알 수 있었던 일의 범위가 아니다……

○유의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경과실일 때 처벌을 면하게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과실에 대한 규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원의 판결도 경과실과 중과실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면서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제가 이해하

는 범위 내에서는 경과실이나 중과실이나의 구분선의 핵심은 이 사람의 경험 그다음에 맡고 있는 일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알 수 있었던 일이라고 보여지면 중과실이고 이 사람의 경험과 지식 범위 밖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에 경과실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국장님, 업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공감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금융위가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중과실이면 ‘고의적 성향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양반의 경험이라든지 역량을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것 그야말로 엇장수 잣대가 될 수 있지않아요.

지금 유의동 위원님이 그걸 물어보셨으니까 망정이지 금융위도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법 개정을 해 줘니까? 형평성 맞추자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유의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유의동 의원안이 아니고 박용진 의원안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부 제출안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한테 제가 여쭙잖아요. ‘경과실은 뭘니까?’ 그런데 ‘경과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법원도 그런 경향이라는데 저희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법이라는 건 기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 자체가 모호해진다고 하면 어떻게 결정을 하지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위원님 지적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고의·중과실·과실에 관한 규정 자체가, 타 법도 구체적으로 과실의 형태를 유형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법원의 판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법이 고의·과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양태를 유형화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로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금융권에 있어서 경과실로 간주된 법원의 사례를 찾아오라 그러면 저희가 찾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법안에서 규정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의동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답이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죄송합니다.

○**오기형 위원** 저도 간단하게 이 지점 제가 이해하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의·중과실·경과실 이것에 대한 입법례는 보편적인 입법 형태입니다, 다른 법과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입법의 개정 자체도 특이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음에 입법 재량이 있는 거니까 충분히 중과실이나 경과실에서 어디까지 면책할 것이냐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부안 자체는 지금 일반적인 입법의 유형을 따라가고 있는 것에 있어서 특이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용어 자체는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과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표현되기가 어려워서, 특수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과거에 다른 법 논쟁하면서 징벌 배상 같은 경우에 기업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때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징벌 배상 책임에 기업의 책임이 있다 이런 식의 또는 당사자 책임이 있다는 데, 이것에 대한 기준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서의 몇 가지 기준을 강화하면 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위반할 때 중과실로 간주될 수는 있는 것이어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금융위에서 계속 진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로써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어떻게 할까요?

○**박재호 위원** 통과하지지요.

○**유의동 위원** 이견 없습니다.

○**이용우 위원** 제가 한마디만 딱 추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통과?

○**이용우 위원** 예, 통과시키는데 금융위에서, 지금 오기형 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 경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물을, 금융위나 감독 당국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경과실로 본다, 중과실로 본다, 그러다가 법원에 가서 다투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지면 판례에 의해서 수정이 되기 때문에 금융위가 경과실과 중과실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고 그걸 또 법원까지 가서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조건입니다. 그 조건하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위원님들 말

씀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부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저희 금융위 내부에 규정화되어 있어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 부과하는 상황들에 있어서 양형기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이 하게 되는 징역형의 경우에는……

○**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걸 갖다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저희가 아무튼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해 주시지요.

경과실·중과실을 구별한다는 게 참 애매한 일 이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 않겠고요.

다만 임원이 재직 중 수행한 직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퇴직한 뒤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 후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도록 되어 있나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퇴직 후에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 내에 있고 원인 행위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이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위원** 임원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제가 잘 몰라서요.

기존의 시중은행들도 사외이사라든지 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실력 있고 없고의 문제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저축은행 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라든지 혹은 이사장, 주요 대주주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부실 경영의 원인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임원 선임에 대한 별도의 다른 규정은 없지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따로 달리 있고요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규정도 저축은행법에 있습니다. 대주주와 관련된 사항, 임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은행과의 합리적인 차별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원에 대해서 사후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축은행 사태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 오히려 은행에 비해서 더 과하게 책임을 묻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은행에 비해서 과하게

책임을 묻는 조항이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액의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과 관련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박용진 위원 저희가 정부안처럼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임원 책임과 관련해서 하게 될 경우에, 아까 이 문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전에도 여러 부실 운영이라든지 잘못된 운영들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가 바꾸는 것의 핵심은 중과실이나 경과실이나만 바뀔 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저축은행 임원이 거액의 예금 사고에 대해서 은행 임원에 비해서 훨씬 더 가중된 책임을 지는 것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금융공사법까지 하고 정회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가상자산법은 논의 들어가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양해해 주시면 1건 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소위 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상한을 현행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또는 폐지하거나 상한을 대령에 위임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담보주택 평가가격 상한을 조정하거나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주택가격 상향하고 담보주택 평가가격 상한 조정 현황은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여러 가지 의견 내주셨는데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하기 원하고요. 담보주택 평가가격 상한은 현행과 같이 12억 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억 원은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12억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이견 없으십니까?

○김한규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대상 주택가격 상한액 말씀입니다. 강병원 의원안은 폐지로 돼 있고 윤창현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인데 금융위는 윤창현 의원안하고 동일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연금으로 가입하지 못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너무 상한을 올렸을 때 혹시 약간 충격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게 무슨 충격이 어떻게 있는지를 전혀, 지금 사실 주택연금은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이게 다른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각종 세제상 혜택을 주거나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20억, 3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노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는 걸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폐지로 해도 괜찮습니다.

(웃음소리)

○김한규 위원 둘 중의 하나를, 그래도 금융위 입장이 중요한데. 그렇게 따지면, 강병원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 둘 다 좋은데 오늘 윤창현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 안 따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대통령령 안으로 하면 폐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좀 더 플렉서블(flexible)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위원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주택연금보증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 많이 공급이 되면 결국 보증배수가 올라가고 그 계정 기금 자체가 정부 재정 출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입 자격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는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주택연금 가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초 제도 도입 시점 보다는 가입 요건을 완화해도 주택연금계정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가입 대상을 완전히 폐지해서 다 가입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한도를 올리더라도 플렉서빌리티(flexibility)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조금 안정성이 확보되겠다라는 차원입니다.

○**김한규 위원** 지금 재정 부담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지금은 사실 기금 재원이 많이 있어서, 가입자가 사실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김한규 위원**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그 기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냐고요, 1년에.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저희가 지금 주택연금 공급 현황을 보면 1년에 가입하는 건수가 1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 지급액이 되는데, 연금 지급액은 지금 2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은……

○**김한규 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부의 부담……

○**이용우 위원** 얼마씩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탄소리해.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이게 다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것에서 저희가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부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출연금은 한 190억 정도를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제 말씀은 정부는 출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손실이 발생해서 실제로 얼마가 사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윤창현 의원님 안처럼 하는 것 저는 이번에는 동의를 할 텐데, 이런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문제

의식이 그런 거거든요.

저는 되도록 법에서 할 수 있는 건 법으로 정하고 불필요하게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은 폐지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를 제대로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고 폐지까지 고민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해야 될 논의를 결국 부처 내에서 다 그냥 하겠다, 위임하는 이런 방식의 논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 단순한 절차가 아니면 매번 동일한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윤창현 위원** 하나만 좀 여쭙볼게요.

폐지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령에서 다시 정하지 않아요,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폐지하면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창현 위원** 폐지하면 그냥 모든 주택 다 해주실 거예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법에서 폐지했다는 건 결국은 시행령에 위임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하게 되고……

○**윤창현 위원** 그러면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도 다 되게 된다 이거지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예.

○**윤한홍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은 강병원 의원안에 찬성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김한규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걸 그냥 단순히 재정이란지 금액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것 우리나라 국민들 문화와 관계있는 겁니다.

집 가진 어르신들이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것 들어서 그냥 연금 받아 가면서 집 없어지면서 이 과정을 해서 가져가겠다는, 이런 과정을 밟아 가는 어르신들 별로 없어요. 전부 이 집을 어떻게 처분해서 자녀들한테 주고 이런 문화지, 이게 아직 우리나라 문화에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금융위에서 이 제도를 만약에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되면 실태조사도 하고 연구용역도 해 가지고 국민들 마인드라고 그러니까, 의식조사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9억짜리 15억짜리 가지고, 강남에 가면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까? 전부 다 15억 넘어가잖

야요. 그냥 여러분들은 현실과 따로 논다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씩 화가 나서 그냥 말 안 하기도 하고 고함지르기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하고 안 맞는 제도거든요, 이게.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하고 윤한홍 간사님 지적하신 내용이 다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정서나 이런 측면을 강조해 주신 거고요.

저희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은 향후에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는 지금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자격은 완화하되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비해서 약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금융위원회에서 이 실태조사도 하시라니까, 국민의식 실태조사를.

여러분들이 50억 100억으로 늘려도 재산을 맡겨 놓고 혼자 그냥 죽을 때까지 쓰고 가겠다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전혀 고려를 안 하잖아. 그냥 단순히 부동산 가격, 재정, 딱 두 가지만 생각한다니까. 이것은 그 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들 의식 수준과 관계되는 제도거든요.

○박재호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예.

○박재호 위원 50억짜리 집을 가져도, 담보는 50억이지만 국민연금은 일정 수준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해야지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지요. 그렇지요? 9억짜리 집이든 50억짜리 집이든 담보 금액은 많지만 모기지론으로 줄 때는 일정 금액을 맞춰 주면 되지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윤한홍 위원님이나, 이걸 폐지하더라도 실태조사를 좀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의 수요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 소위 말하는 58 전후 세대들의 많은 분들이 강남에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사실 자기 소득이 없으니까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 30억이 돼도 12억 정도, 19억 정도 일정 비율의 모기지론을 주면 그분들의 생활에 유용하니까, 그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담보는 많이 잡되 똑같이 해 주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개정안이 2건입니다.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과 담보가액 상한을 조정하는 게 있는데 담보가액 상한을 이번에 12억으로 조정하면 만약에 가입 요건을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가액은 12억으로 되기 때문에 주택연금액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시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금공 내규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총액의 현재 가치를 5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소득이 낮으신 분들 위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그리고 윤한홍 간사님 말씀 주셨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적은 이유 자체가 주택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물려줘야 될 자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의 유인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환경이 조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이고 강병원 의원님, 윤창현 의원님, 태영호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취지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정서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도 한도는 좀 두시지요. 이게 뭐 50억 60억짜리도 다……

○박재호 위원 일단은 윤창현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윤창현 위원 감사합니다.

○오기형 위원 일단 오늘은 윤창현 의원님 안대로……

(웃음소리)

○김성주 위원 내용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가입 대상 상한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는 것은 다 동의가 된 건가요?

○윤창현 위원 담보가액은 12억이에요. 현행 그대로예요.

○김성주 위원 담보만 12억으로 하고 그다음 가입 대상은 폐지하고 그리고 시행령에 위임한다?

○**윤창현 위원** 폐지 아니고 시행령으로 위임한다고 조항에 써 있는 거지요. 반드시 얼마 이상은 가입을 못 하는 거지요.

○**김성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상한을 정하는 것이 주택연금 도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취지일 텐데 그걸 시행령에 위임을 해도 되는 겁니까?

○**윤창현 위원** 그건 정부에서 플렉서블하게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윤한홍 위원** 저도 생각이 그래요. 강병원 의원안이 참 좋아 보이는데 이게 복잡한 문제가 얹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정부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냥 하기보다는.

○**김성주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연금을 운용하는 실태를 보면요 주택값이 올랐을 때는 이것을 해지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려는 경향이 많았고, 최근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다시 또 가입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윤한홍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 집을 활용해서 충분히 노후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국가에 귀속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상한을 폐지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쪽은 주택연금으로 안 들어옵니다.

이게 원래 취지는 상대적으로 집 한 채 외에 아무런 소득과 연금이 없는 사람들의 노후를 위해서 도입하고, 약간은 후한 제도예요. 그런데 고가주택이 우르르 들어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또 혜택을 좀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가입 대상을 처음에는 좀 제한을 하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하더라도, 지금 9억에서 12억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그냥 시행령에다 위임한다고 하면 너무 많이 넓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윤창현 위원** 정부가 그렇게 많이 넓히지는 않을 거예요.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그 정도 하고 담보 상한을 정하는 정도 그 정도면 했는데 그것을 획 시행령에다 위임하면 처음에 9억이라고 정했던 입법 취지가 다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박재호 위원** 정확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9억 이하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공시지가로 9억짜리 집을 내가 주택공사에 맡겼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는 금액이 5억 정도라고 똑같은가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일률적으로 5억 정도까지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12억이든 20억이든 맡기더라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똑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되면 부대의견에 ‘금융위원장이 3년마다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이게 있지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신 거지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이형주**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국회가 아니고 상임위에, ‘검토하여 상임위에 보고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걸로 해서 의결하고 오늘 위원님들 추가로 나온 것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부칙에 ‘공포한 날 또는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데 가능하면 3개월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 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정무위원회 직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민국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김희곤	박용진	박재호	오기형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이용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기획조정관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금융정책국장	이형주
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자본시장국장	이운수
구조개선정책관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	박민우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윤차용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사장	유상대